#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2931호

제출년월일 2021. 11. . 제 출 자 김 계 순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독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기본원칙(안 제4조)
  - 장애인공무원은 근로지원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 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제77조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생 략
    - 나) 예고결과 :
  - 2) 부서협의
    - 가) 협의기간 : 해당없음
    - 나) 협의결과 :
  - 3)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###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워 편의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장애인공무원"이란 김포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2. "중증장애인공무원"이란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근로지원인"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보조공학기기·장비"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.
- 5. "전문기관"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그밖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- 1.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
- 2. 정직,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
- 3. 국내·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

제4조(기본원칙)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(이하 "보조공학기기 등"이라 한다)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

을 받을 수 있다.

- ② 김포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범위)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
  - 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
  - 3.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- 4.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(지원 기준 및 절차)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,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지원방법)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

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제8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  - 2.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
  - 3.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  - 4.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  -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9조(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)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